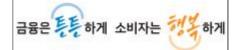


보도참고



| 보도 | 2024.9.30.(월) 조간 | 배포 | 2024.9.27.(금)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상품심사판매분석국 보장상품팀 | 책임자 | 팀 장 | 송상욱 | (02-3145-8242) |
| | | 담당자 | 조사역 | 김준혁 | (02-3145-8246) |

[금융꿀팁] (155)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(통지의무)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-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-

주요 내용

- □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 - 이번에는 155번째로 직업·직무 변경,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(통지의무)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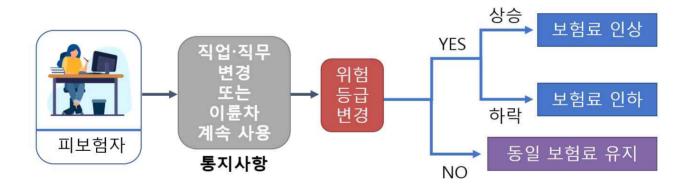
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

- ①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·직무의 변경,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합니다.
- ②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·인하될 수 있으며,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③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,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④ 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,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1 계약 후 알릴의무(통지의무)란 무엇인가요?

- ◈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·직무의 변경,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합니다.
- □ (상해보험) 직업·직무가 변경된 경우 통지하여야 합니다.
 - 직업·직무의 성격에 따라 **사고 발생 위험성**이 달라지므로 **상해보험은 직업·직무별로 구분**하여 **보험료를 산출**하며,
 - 이에 상해보험 가입자(계약자 또는 피보험자)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*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 - * <예> 사무직(1급)→생산직(3급), 자가용 운전자→영업용 운전자 변경 등

< 직업·직무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 예시 >



- **보험가입자**는 **직업뿐 아니**라 **직무***의 **변경**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**보험회사**에 그 **변경사실을 알려**야 합니다.
 - * 직무의 정의: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(질병·상해보험 표준약관 §15)
 - 아울러, 직업·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,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※ 직업·직무의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도 향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< 직업·직무 변경의 예시* >



- * 보험개발원의 직업분류표를 참고하였으며, 실제 보험사 직업등급과 다를수 있음
- □ (화재보험) 보험목적물의 변경 등 발생시 통지하여야 합니다.
 -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·이전,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 변경·개축·증축 등이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,
 -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*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료 유지, 중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합니다.
 - * 건물구조 및 변경 후 업종에 따른 보험료 차이, 건물의 방재시설 현황 등



2 통지의무를 이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◈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·인하될 수 있으며,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□ (상해보험)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-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, 두 직업간 책임준비금* 차액을 보험회사에 납부**하여야 하며,
 - *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
 - ** 현재 준비금 정산방식은 일시납으로만 가능하나,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표준약관을 개선할 예정('24.下 개정, '25.1월 시행 예정)
 -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, 보험회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습니다.

<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 및 준비금 증액 예시*>



- * 55세 남성, 15년간 보험료 납부 후 사무직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는 경우
- □ (화재보험) 보험료가 변동되거나,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-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**증가***한 경우 **보험료**가 **인상**되고, 위험이 **감소**한 경우에는 **보험료**가 **인하**됩니다.
 - * (예시) 금속가공공장 1년 보험료 18,000원 → 라텍스제조공장 1년 보험료 1,379,000원 **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화재보험 참조순보험요율 中 기본요율 기준, 가입금액 1억원 가정
 - 아울러,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- 3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- ◈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,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□ (공통)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**보험회사**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·증가의 **통지**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**1월 이내**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한편,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(화재보험) 보험계약 해지 사례

- (판례) A회사는 공장화재보험을 가입한 후, 보험회사에 통지없이 공장 내에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
 - □ 법원은 **폐마그네슘**은 **자연발화 가능성**이 있고,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**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**(대법원 2011. 7. 28 선고 2011다23743,23750 판결)
- □ (상해보험)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.
 - **통지의무 위반** 이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**보험금을 삭감지급***할 수 있고, 이미 **보험금을 지급**했다면 **반환**을 **청구**할 수 있으며,
 - *예시 :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, 직업변경 전 보험료 3만원, 직업변경 후 보험료 6만원 ⇒ 보험금 = 1천만원 × 3만원 ÷ 6만원 = 5백만원
 - 다만,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**인과관계**가 **없는** 경우 보험회사는 **보험금을 전액 지급**합니다.

(상해보험) 보험금 삭감 지급 관련 사례

- (판례) B씨는 가정주부(상해등급 1급)으로 상해보험 가입한 뒤, 공장직원(상해등급 3급)으로 직업변경이 되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장 근무 중 상해 발생
- □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가정주부과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
 □ 나22711 판결)
 - * 보험금×(1급 보험요율÷3급 보험요율)

- □ (**화재보험**)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.
 - 화재보험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,
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.
 - 다만, 이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**인과관계**가 **없는** 경우 보험회사는 **보험금을 전액 지급**합니다.

(화재보험) 보험금 미지급 관련 사례

- (판례) C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,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사하던 중 화재 발생
 - ☞ 법원은 **통지의무 위반을 인정**하여 보험사의 **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**하고, 상법 제655조에 따라 **보험금 지급의무**가 **없다**고 판시(대전고등법원 2016. 9. 9 선고 2015나11814판결)

4 퉁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나요?

- 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,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□ (공통)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,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.
 - 보험가입자는 직업·직무 변경시 **지체 없이**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**직원**이나 **콜센터**에 알려야 합니다.
 -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사항을 알리거나, 보험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닙니다.

(상해보험)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이행이 인정되지 못한 사례

- [2] (판례) D씨는 계약 이후 직업이 변경(전업주부☞공장직원)된 사실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설계사 E씨에게 알렸고,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
 - ☞ 법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하는 중개자에 불과하여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는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 효력이 없다고 판단(대구고등법원 2015. 9. 8. 선고 2014나22711 판결)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

관련 법규

□ 상법

제652조(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) ①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53조(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)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55조(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)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, 제651조,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고지의무(告知義務)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

□ 표준약관(질병·상해보험)

제15조(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)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, 전화,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
1.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

(중간 생략)

-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(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)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,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(이하 "변경전 요율"이라 합니다)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(이하 "변경후 요율"이라 합니다)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. 다만, 증가된 위험과 관계 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.
-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제16조(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)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- 1.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(계약 전 알릴 의무)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- 2.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(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)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

(중간 생략)

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(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)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□ 표준약관(화재보험)

제16조(계약 후 알릴 의무)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- 1.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
 - 2. 양도할 때
- 3.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, 개축,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
- 4.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
- 5.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
 - 6. 다른 곳으로 옮길 때
 - 7.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
-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,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다만,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